

8

2019

• 통권 432호 •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가정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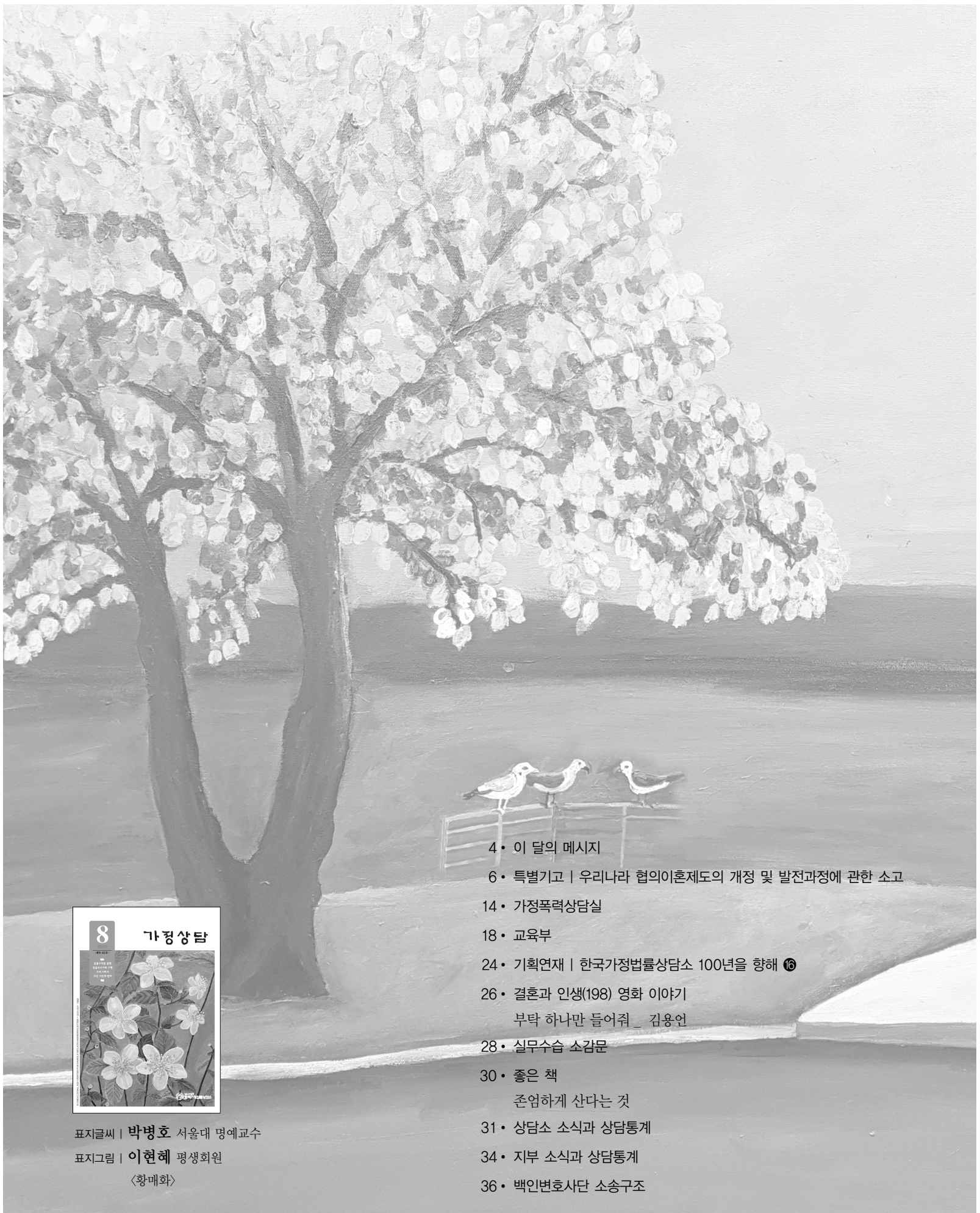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 본소 교육부는 7월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옥계에 위치한 한국여성수련원에게 비혼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를 진행하였다. (관련내용 18면)



▲ 7월 3일 본소 강당에서 신연중학교 1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률구조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련기사 31면)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황매화〉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별기고 | 우리나라 협의이혼제도의 개정 및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
- 14 • 가정폭력상담실
- 18 • 교육부
- 24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⑩
- 26 • 결혼과 인생(198) 영화 이야기
부탁 하나만 들어줘 _ 김용언
- 28 • 실무수습 소감문
- 30 • 좋은 책
존엄하게 산다는 것
- 31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 34 •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 36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이 달의 메시지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가정

.....
변함없이 모든 가정과 함께 하는 상담소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아이가 어릴 때에는 서툰 육아가 당황스러웠고 사춘기에 접어들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평소 남들의 이목이 신경 쓰여 휴가도 마음대로 못 갔는데 상담소 캠프에 오게 되어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캠프가 너무 좋았고, 같이 오신 분들을 보며 ‘혼자서도 저렇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와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여름 2박 3일로 열린 제13회 비혼모 캠프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지난 해 캠프 참가자들의 후기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봄이면 1박 2일로 놀이공원에서, 여름이면 2박 3일로 바닷가에서 열리는 비혼모 캠프 참가자들의 후기나 지원에 대한 요청 사항들을 보면서 상담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한국전쟁 직후 전쟁의 상흔을 딛고 도약하려는 한국 사회에서 억눌린 여성 인권의 회복을 통해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바로 세우고자 시작된 상담소는 사회의 변

화에 발맞추어 여성 인권의 회복은 물론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복리를 기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즉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변하는 사회 그리고 급변하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가정과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복리를 생각하며 법률상담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을 위한 올바른 법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63년의 역사 동안 한결 같은 걸음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화하는 사회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부모 가정, 비혼모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 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왔습니다.

근 20여 년 전인 2003년 상담소는 호주제 폐지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중에도 비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혼모에게 인권은 있는가? 비혼모 가정의 법적 권리와 복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비혼모 가정의 생계를 위한 지원, 법적 그리고 제도적 보호를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그 같은 노력은 뜻을 같이 하는 각계의 후원 등을 통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어 왔습니다. 또한 상담소는 2009년부터 비혼모 가정의 자녀양육, 경제적 자립, 인지와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한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해 1박 2일 자녀동반 캠프 및 일일 교육, 비혼모 관련 기관에 대한 출장 법교육과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삼성생명의 사회공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비혼모 가정과 봄, 가을로 자녀동반 캠프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참가자들로부터 크나큰 호응을 얻어 왔습니다. 이는 삼성의 비혼모 문제에 관한 각별한 관심에 힘입은 것으로 이러한 캠프를 통해 일상을 영위할 소중한 추억을 갖게 된 비혼모 가정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보다 많은 이들에게 희망찬 삶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어 상담소는 지난 2014년에도 ‘비혼모와 그 자녀의 삶, 이제는 사회가 나서야한다’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통해 비혼모 가정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며 법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어 지난 5월 기준 인구 1천 명 당 새로 태어난 아이의 수가 연간 5.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아 수는 통계 집계 이래 월별 최저 기록을 3년 2개월 연속으로 갱신했고, 혼인 건수 역시 5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 사회의 인구문제는 이제 사회의 유지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정과 그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을 포용하려는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정책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장벽은 여전히 두텁고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쉽지 않은 현실에서 소중한 한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도록 결심한 모든 비혼모들과 그 자녀들이, 특히 미성년 비혼모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권과 권리를 존중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더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와 같이 그 선두에 상담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협의이혼제도의 개정 및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

I. 서론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합치하면 가정법원에서 자녀양육안내, 상담권고,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 작성, 이혼숙려기간 등을 거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된다.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일방이 법원에 조정 신청이나 청구를 하여 부모교육과 상담권고, 조정조치, 사실조사, 임시조치, 사전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 조정 혹은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 열거된 혼인 상 의무위반이 있어야 이혼이 성립된다. 재판이혼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서구의 이혼제도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별도의 법체계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온 우리나라 협의이혼제도의 개정 및 발전 과정을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협의이혼제도의 연혁 및 개정과정

1. 일제 강점기 조선민사령과 근대적 이혼제도 도입

조선 말 일제 강점 이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오늘날과

같은 골격의 이혼제도로써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도입되었다. 일제는 조선의 민사관계를 규제하기 위해 1912년 3월에 조선민사령(제령 제7호)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일본 민법 중의 일부가 의용되기 시작하였다.¹⁾ 조선민사령 제1조는 조선인의 민사에 관한 사항은 조선민사령이나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고 특별법령이 없는 것에 한하여 일본 민법을 의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령 제11조에서는 민법 중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조선인의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신분관계에 관하여는 우리 관습에 준거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조선민사령 제11조는 1921년 11월 14일에 개정되어 친권, 후견, 보좌 및 친족회 중 무능력자를 위하여 설치되는 친족회에 관한 일본 민법 규정을 동년 12월 1일부터 의용 하도록 하고, 1922년 12월 7일에 제11조가 다시 개정되어 혼인연령, 재판상 이혼, 인지, 친족회에 관한 잔여규정, 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 등이 민법을 의용 하도록 하는 한편 분가, 절가재흥(絶家再興), 혼인, 협의상 이혼, 입양, 협의상 파양 등에 관한 종래의 사실주의가 신고주의로 전환되어 19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²⁾ 이에 따라 1923년 7월부터 재판상 이혼은 일본 민법을 의용하게 되었고, 협의이혼 역시 일본 민법상의 신고주의제도가 도입되었다.

조선에 협의이혼의 관습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일제당국

1)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1967), 21면.

2) 정광현, 앞의 책, 22면.

은 1914년 정무총감회답³⁾에서 협의이혼의 관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였으나, 1915년에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의 조회에 대한 정무총감의 회답에서는 협의이혼의 관습이 있다고 번복하였고, 1918년 4월 11일 경성복심법원은 “조선의 관습에 의하여 협의상 이혼할 수 있다”라고 판결⁴⁾하였다.

이어 1921년 구관습제도조사위원회(舊慣及制度調査委員會) 결의가 협의이혼제의 관습을 인정하였고,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 제2항에서 “협의이혼은 이를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 장에게 제출(届出)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명문규정을 신설하여 19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일제는 협의이혼제도가 조선의 관습이라고 인정한 듯 보였으나, 실제로 이 제도는 당시 일본 민법의 규정(제808조)와 동일한 것으로서 관습을 가장하여 일본 민법을 이식한 것으로⁵⁾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1898년 명치시대(明治時代) 민법전 제정 당시 협의이혼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일본이 이러한 협의이혼제도를 채택한 것은 기존에 있던 고유의 풍습을 법제화한 것이다.⁶⁾ 제정 민법 시행 이전 일본에서는 남편이 처를 강제로 축출하는 방식으로 이혼이 행해졌으며, 처가 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⁷⁾

이렇듯 협의이혼제도는 가부장적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남편이 협의이혼이라는 미명 하에 실제로는 처를 축출하는 관습이 이어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것이다.⁸⁾

조선민사령 상 협의이혼의 필요요건은 당사자의 의사합치와 부모의 동의⁹⁾, 그리고 성인 증인 2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이혼신고¹⁰⁾ 등이었다. 그리고 이혼신고는 서면신고 외에 당사자본인의 구두신고도 인정하였다.¹¹⁾

협의이혼은 부부쌍방의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남편이 처 모르게 인장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여 이혼신고를 수리시켰으면 그것은 무효가 되었고 처에게 이혼의사가 없음에도 남편과 시부모, 인척의 강요나 사기에 의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이혼신고는 취소할 수 있었다¹²⁾.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합의라는 이름하에 남편이 아내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혼신고를 하거나, 호적관리를 매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일, 또 남편이나 시부모의 강압으로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던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¹³⁾ 이와 같이 협의이혼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대한 남녀간의 대등한 권리를 보장한 것처럼 보였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협의이혼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의 전권적 이혼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¹⁴⁾

결국 일제 강점하의 협의이혼제도는 일제가 조선의 혼인 가족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자신들의 법을 강제로 이식한 것으로, 우리나라 역시 ‘협의’ 이혼이라는 명목 하에 경제적·사회적 강자였던 남편이 열등한 지위에 있던 처를 일방적으로 축출하는데 협의이혼제도를 악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일제하의 친족상속에 관한 관습법규범을 정리한 주요자료로는 ① 관습조사보고서 ② 사법부 장관, 조사국장관의 통첩, 회답 ③ 정무총감 내지 중추원의장 등의 통첩, 회답 ④ 법원장 내지 판사의 통첩, 회답 ⑤ 사법협의민사심의회의 결의, 회답, 질의응답 ⑥ 판례조사회결의 ⑦ 舊慣及制度調査委員會 결의 ⑧ 고등법원판결 등이 있다(정광현, 앞의 책, 23면 참조).

4) 京城覆審法院 1918. 4. 11. 선고; 김주수, 『한국가족법과 과제』(삼영사, 1993), 93면.

5) 김상용, 『가족법연구Ⅲ』(법문사, 2010), 169-170면.

6) 이태영, 『한국이혼제도연구』(여성문제연구원, 1957), 54-55면 참조.

7) 김상용, 위의 책, 170면.

8) 김상용, 앞의 책, 171면.

9) 부부 쌍방이 이혼의사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당시 관습법상 협의이혼은 무효라고 해석했다. 상세한 내용은 이태영, 앞의 책, 39면 이하 참조.

10) 조선민사령 제11조 제2항, 조선호적령 제87조, 이태영, 앞의 책 41면.

11) 조선호적령 제89조, 이태영, 앞의 책, 41면.

12) 1922. 10. 12., 政務總監回答; 1922. 7. 15. 사법협회결의; 조선고등법원판결 1930. 7. 18., 조선고등법원판결록(1930) 152면 등. 김주수, 앞의 책, 94면.

13) 이태영, 앞의 책, 57-58면 참조.

14) 김주수, 앞의 책, 94면.

2. 협의이혼제도의 시행과 변화

(1) 정부안과 제정 민법상의 협의이혼제도

1954년 당시 국회에 제출되었던 정부안의 민법안 중 친족상속편에서는 조선민사령의 규정을 답습하여 일본 민법과 동일하게 협의이혼제도를 두었다.¹⁵⁾ 그리고 당사자 본인에 의한 구두신고제도는 폐지하여 서면신고주의로 전환하였다.¹⁶⁾

그러나 하위법인 호적법에서는 이혼신고의 수리나 심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호적공무원은 형식적인 심사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제 강점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출석이나 의사확인이 없어도 협의이혼이 용이하여 남편이 아내를 협박하거나 혹은 속여서 일방적으로 이혼하는 등 아내를 축출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그대로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여성계에서는 ‘민법안 중 친족상속편 수정안 및 이유서’에서 ‘협의이혼신고의 실질적 심사에 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고 이러한 개정의견은 정일형 의원 등 33인의 의원의 이름으로 국회 심의과정에 제출되었다. 위 수정안의 내용과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¹⁷⁾

“제82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혼신고와 이혼신고서에 연서한 증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소관공무원의 면전에 출석하여 이혼신고가 진정임을 선서하여야 한다. 전항의 소관공무원은 당사자 쌍방 인물의 진부와 그 의사를 확인하고 그 제823조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을 때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안이유 : “협의이혼에 관한 신고주의에 이혼의사의 확인 절차를 가미코자 함이 취지이다. ① 원래 각국에서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주로 가정 내의 분쟁을 배우자나 또는

죄 없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구미와 달리 경제적·사회적 강자인 부가 약자인 처를 일방적으로 축출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합의만 있으면 이유는 고사하고 일시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신고 1통을 구청장·시·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부부라는 신성하고 중대한 관계는 소멸되고 만다. 서구제국의 협의이혼은 그 절차와 조건을 매우 복잡하게 하고 또 제한하여 경솔하고 일방적·강제적인 협의이혼을 방지하고 있으며 그중 백의(백기에:필자 주)의 협의이혼절차는 참으로 복잡하다. ② 우리나라와 같이 남녀평등이 기해 있지 못한 실정 하에서의 간단한 신고주의는 여성에게 심히 불리한 제도이므로 이혼당사자의 자유의사의 확인, 특히 약자인 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당사자와 증인을 출두케 하여 부부의 의사가 진실로 이혼을 원하는가 확인하고, 이혼신고를 수리케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위 수정안은 협의이혼 시 이혼 당사자의 자유의사의 확인, 특히 약자인 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증인을 출석시켜 부부의 의사가 진실로 이혼을 원하는가를 확인하고 이혼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¹⁸⁾ 그러나 이러한 수정안은 국회에서 공방 끝에 부결되었고, 결국 제정 민법상 협의이혼은 구민법과 마찬가지로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민법 제834조)와 ‘협의상 이혼은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836조 제1항, 제2항)’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남녀평등을 전제로 하는 협의이혼제도가 남녀의 평등하지 못한 지위로 인해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 구조가 되므로 이혼의사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위 수정안의 내용은 1963년 개정 호적법 제79조의 2에 반영되었고, 이후 협의이혼제도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15)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는 협의이혼의 요건과 관련하여 “제827조 부부는 그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 제828조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제829조 이혼신고는 그 이혼이 제805조 제2항 및 전조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2), 411-412면 참조).

16) 정광현, 앞의 책, 378면.

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앞의 책, 452-454면 참조.

18) 국회 심의회의에서 정준의원은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제도를 없애버리고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자고 하면서 협의이혼의 폐지가 어렵다면 정일형의원의 수정안이 건전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달호의원은 이혼자유 원칙을 선언한 마당에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이혼을 어렵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였다. 상세한 것은 제26회 국회정기회의의 민법안의 제2독회 속기록, 1957년 12월 11일자, 14-19면; 정광현, 앞의 책, 부록편 526-534면 참조.

(2) 협의이혼신고 및 의사확인제도의 변화

협의이혼제도 시행 이후 협의이혼 신고 시 호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의 문제점 등이 논란이 되자 1963년 1월 가정법원 설치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던 가사심판법기초위원회¹⁹⁾²⁰⁾는, 가사심판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가정법원 설치요강’에서 협의이혼 시에는 가정법원 또는 거주관할법원의 확인을 받는 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협의이혼제도 개정론을 제시한 바 있었다.²¹⁾ 가사심판법은 1963년 7월 31일 법률 제1375호로 공포되었는데, 가사심판법의 제정에 수반하여 호적법 제79조의 2를 신설하여 ‘협의이혼 신고는 그 서면의 진정 성립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의이혼신고에 대한 실질적 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²²⁾

이러한 협의이혼신고에 대한 실질적 심사제도는 호적공무원이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서면의 진정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실질적 심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만약 당사자 일방이 질병 또는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상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서면의 진정 성립 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²³⁾ 그러나 협의이혼신고서 수리에 있어 호적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심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호적공무원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호적리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준 후에도

협의이혼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호적공무원이 사실상 별로 효과적인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가정법원 내에 협의이혼부를 신설하고 법원의 통제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²⁴⁾ 이 주장에 따르면 약자인 처의 이혼의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동적인 이혼의사를 명확하게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확인하게하고 이를 협의이혼신고의 수리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가정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할 때에는 당사자 쌍방을 출두하게 하여 이혼신고서의 진정성 여부와 합의에 이른 경위 등을 진술하도록 하고, 혼인파탄의 정도를 심사하여 카운셀링을 권유·의뢰하거나 혼인생활 회복을 설득하는 한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하고 화해의 시도도 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위자료와 자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의 결과가 사회정의와 형평에 어긋날 때에는 법원이 관여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협의이혼 절차 전반에 걸쳐 법원의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와 같은 신중한 확인이라면 가정법원의 조정제도와 차이가 없으므로 차라리 협의이혼제도를 폐지하고 조정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었다.²⁵⁾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힘입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공포된 민법 중 개정법률²⁶⁾에서 제836조 제1항을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의 정한 바

19) 위원회는 권순영 판사, 정광현 교수, 이태영 소장, 김용한 교수, 이영섭 교수 등과 군인 5명이 포함된 12명으로 구성되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앞의 책, 138면).

20) 가정법원 설립의 이론적 기초는 1955년 11월에 이용훈씨가 ‘가사심판소의 설치를 촉함’이란 논문을 최초로 발표하였고, 1957년 4월 이태영 박사가 ‘친족상속편에 관한 민법공청회’에서 가정법원설립에 관한 언급을 하였으며, 1960년 11월 권순영 판사가 ‘가정법원의 설치를 요망함’이란 논문을 발표함에 따라 대법원은 1961년에 가정법원의 신설을 기획 하였다. 또한 1962년 9월 3일 이태영 당시 여성법률상담소 소장의 주도로 전국여성단체는 연합하여 친족상속법개정과 가정법원 설치를 요망하는 진정서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법무부장관, 법제사법위원장 등에 제출한 바 있다. 동 진정서에서는 ‘가정문제의 해결은 만인 공개리에 법정에 의한 판결보다는 인간의 도의와 인정과 경험에 호소하면서 특히 교육학자, 사회학자, 의학자들의 관여 하에 비공개방법에 의한 조정, 화해로써 적합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가사재판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이 제도는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바, 특히 우리나라 실정 하에서는 경제능력 없는 당사자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단 시일 내에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더욱 긴급을 요하는 제도라고 인정되어 그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라고 하여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사건과 차별화되어 독립적으로 가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정법원의 설립이 주요한 과제임을 주장하였다(이태영, 『한국이혼연구(수정판)』(이화여자대학교, 1969), 306-307면 참조).

21) 김상용, 앞의 책, 173면; 김주수, 앞의 책, 459-460면.

22)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

23) 호적예규 제454항, 『법원예규집(하)호적편』, 266면; 김주수, 앞의 책, 460면.

24) 이태영, 앞의 책, 266-268면 참조.

25) 김주수, 앞의 책, 468-469면 참조.

26) 1979년 1월 1일 시행.

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개정하여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명문화하였다. 또한 1978년 12월 6일 호적법 제79조의 2를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한다' 로 개정하여 가정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제도가 확립되었다.

(3) 협의이혼제도의 개혁

1978년 협의이혼의사확인제도가 시행된 이후 협의이혼 제도는 별다른 변화 없이 운용되었으나 한편 협의이혼제도의 간이성 등의 문제점이 계속 논란이 되었다. 가정법원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제도로 축출이혼을 방지할 수는 있었으나 협의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문제 등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1990년 1월 13일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친권행사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민법의 친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 호적법²⁷⁾이 개정되어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이혼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고, 호적법 시행규칙²⁸⁾에서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시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지정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을 뿐 자녀 양육에 대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치로는 미비했다.

또한 협의이혼은 그 절차가 매우 간소하여 충분한 숙고나 당사자 간 진지한 협의 없이도 손쉽게 이혼이 가능하였다. 실제로 이혼 상담을 하는 현장에서는 잠시 감정에 휩싸여 이혼결정을 내리고 후회하는 경우라든가 이혼 후의 문제들 특히 자녀양육 문제나 재산권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고려 없이 협의이혼을 한 뒤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집적되었다. 이에 따라 이혼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상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이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찾았을 것이라는 불만들이 제기되었다.²⁹⁾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 당사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형식적인 이혼의사확인에만 머물러있는 협의이혼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혼숙려기간 도입을 통해 당사자들이 원만한 조정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숙려기간 동안 이혼 전 상담과 합의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제도' 입법화운동을 시작하였다.

협의이혼제도를 개선하자는 위와 같은 움직임에 대하여 숙려기간과 이혼 전 상담 도입은 이혼 당사자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며 이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여성단체의 반대의견도 있어 많은 사회적 논의가 제기되었다. 2004년 5월 10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는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고 2개월 후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도록 할 것과 이혼의사확인 시 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약정을 확인해야 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혼숙려기간과 이혼 전 상담제도 법제화를 위한 개정 사안³⁰⁾이 제시되었다. 또한 동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국민의

27) 호적법 제79조 제1항 제6호.

28) 호적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29) 협의이혼의 간이성으로 인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접수되었던 피해 사례들은 ① 잠시 감정에 휩싸여 이혼결정을 내리고 후회, ② 이혼 후의 문제들 특히 자녀양육문제, 권리보호 등에 관해 충분한 고려 내지 지식 없이 이혼, ③ 자녀 양육 책임불분명으로 인한 이혼가정의 불안정과 미성년 자녀 복리 저해, ④ 상대방 강압이나 순간적 판단 잘못으로 작성된 합의서로 인한 피해, ⑤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 자녀와 재산문제를 모두 알아서 다루어 줄 것으로 기대, ⑥ 가장이혼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30) 주제 발표자인 김상용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 방식) ①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정보를 받은 후 2월이 경과된 후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제2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심사한 후 이혼의사 및 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협의이혼은 이혼의사확인서와 함께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조사³¹⁾에서는 조사대상자의 74.1%가 이혼숙려기간의 제도화에 찬성하여 이혼숙려기간 법제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위 개정사안을 토대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숙려기간을 3개월로 하고,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혼 전 상담을 명문화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 간의 합의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혼숙려기간 도입에 관한 민법 개정안³²⁾을 마련하여 다양한 기관과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입법화를 촉구하였다. 그 결과 협의이혼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이 주관한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도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³³⁾을 마련하여 2005년 11월 16일 이은영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어 법무부 민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심의과제 중 협의이혼제도 개정 법안이 2006년 6월 29일 공청회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³⁴⁾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0호로 공포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

* 호적법 시행규칙 제87조(이혼의사의 확인) ① 제86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 및 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을 확인하여야 한다(김상용,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4. 5. 10.), 18면 참조).

31) 20세 이상 남녀 1,210명을 대상으로 전국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년 3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이다(표본의 최대한계허용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82\%$). 이혼숙려기간의 제도화화에 관해 조사대상자의 74.1%가 찬성하였으며 반대는 14.9%로 나타났다. 11.0%는 이에 관한 뚜렷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혼숙려기간의 기간 정도는 3-4개월이 37.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5-6개월이 30.4%, 6개월에서 1년이 22.0%, 1년 이상 9.9%로 나타났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앞의 책, 39-67면 참조).

32) 개정안은 김상용 교수의 개정사안을 토대로 김상용 교수의 자문과 상담소 내부 논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 방식) ①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에 이혼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혼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및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재산에 관한 협의 여부를 포함한 합의서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협의내용이 자녀와 당사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보정을 명하거나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협의이혼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제출한다. ⑤ 배우자 일방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등 이혼의 급박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혼확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 제25조(협의이혼의 경우의 상담 권고 등) ① 이혼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이혼에 따른 재산관계와 자녀양육 등에 관한 상담을 받고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혼확인을 신청한 경우 가정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해야 한다. ③ 상담기관의 자격, 이혼상담의 방법과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전문상담기관의 화해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간의 합의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호적법 시행규칙 제87조(이혼의사의 확인) ① 제86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 및 자의 양육 등에 관한 사항과 재산에 관한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동 법안은 특별법으로 제안되었으며, 부부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부 쌍방이 이혼의사확인신청일 전 3월 이내에 법원 외 상담을 받은 증명서와 이혼 후의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합의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법안 제4조)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또한 숙려기간 3개월을 두되 이 기간 동안 상담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숙려기간이 면제 되도록 하였고, 이를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에 모두 적용하도록 하였다. 동 법안은 이혼예방과 ‘혼인생활의 유지 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이었다.

34) 국회에 제출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아야 이혼이 가능하고(제836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의사확인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제836조의2 제4항 신설 및 제837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이 권고된다(제836조의2 제1항 신설)는 등의 개혁적인 이혼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2009년 5월 8일 법률 제 9650호로 민법을 개정하여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하고, 이러한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도록 하였다(제836조의2 제5항 신설).

2007년 12월 21일 개정민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혼숙려기간과 이혼 전 상담제도 도입’을 꼽을 수 있는데, 이혼 의사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면서 가정법원이 후견·복리적 지위에서 이혼절차에 개입을 하도록 한 점에서 파탄주의 이혼법의 성격을 갖는 입법이었다.

III. 협의이혼제도의 과제

(1) 가정법원의 후견 역할의 한계

민법 제837조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

의이혼절차에서는 자녀 양육사항 등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비송사건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사건을 협의이혼사건 절차에서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법에서도 이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당사자들의 자녀의 양육사항 등에 관한 협의가 불충분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협의를 하였을 경우 담당 판사는 직권 개입을 하지 않고 ‘불확인’ 처리를 하는데 그친다. 또한 현행 협의이혼절차에서는 가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아 가사비송사건에서 양육처분을 위한 심리방법으로 인정되는 가사조사, 사건관계인 심문,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실행할 수 없고, 접근금지나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 등의 임시조치도 할 수 없어 불완전한 심리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³⁵⁾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이 가사비송절차에 의해 규율 되도록 개정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이혼’ 사건을 청구 사건과 비송사건으로 나누는 것 보다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절차를 일원화하여 재판상 이혼 체계에서 다루는 것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혼사건에 대한 법원의 개입과 직권의 여지를 넓힐 수 있는 한편 미성년 자녀와 이혼당사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성년 자녀가 없고 재산분할이나 연금분할 등 이혼의 결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협의이혼 제도 영역에서 포섭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여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3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의한 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의한 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이에 관하여 결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민법 제843조의2(직권에 의한 양육자 결정) 가정법원은 양육자 결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양육자를 정한다.

35) 최정인,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제도의 정비”,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개혁위원회 내부자료』(2015), 5면.

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재판절차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협의이혼 시 이혼의 결과에 대한 협의를 법원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혼법의 전반적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상담권고 조항의 한계

민법 제836조의2 제1항에서는 협의이혼 시 이혼상담 권고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협의이혼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할 때와 이혼의사확인 기일 등 2번만 법원에 출석하면 되므로, 상담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혼숙려기간을 둔 가장 큰 이유는 숙려기간 중 전문상담기관(혹은 전문상담인)과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이 이혼에 따르는 문제들을 숙고하고 재산과 자녀 양육 문제 등에 관해 효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현행 규정대로 권고에 그칠 경우 상담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여 상담제도 자체의 의미가 몰각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민법에서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상담권고를 받아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직접규정이 없어³⁶⁾ 상담은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상담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할 것이 요구되지만 법원 절차에서 진행되는 이혼과 관련된 상담은 ‘법적 사건’이 되어 버린 상태에서 법원의 권유 또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의 작동으로 시작될 수 있어 반드시 당사자의 자발성을 전제로는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³⁷⁾

따라서 적어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또한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에 상담을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 하위법 및 규칙과 예규 등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조정 및 자녀양육안내, 부모교육 등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담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있어 절차상 출발이 다를 뿐 현명한 결정과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는 목적은 같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상담절차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IV. 결어

협의이혼은 제정 민법 제834조에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이래 1963년에 협의이혼신고 심사제도가 도입되었고, 1977년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전 일본 민법상의 협의이혼 체계에서 벗어나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의 개입을 명문화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형식적인 이혼의사확인절차로 간이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 자녀 및 이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22일부터 이혼숙려기간도입과 자녀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한 협의이혼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에게 자녀의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협의이혼의사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혼에 앞서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도록 상담권고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종전에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간단히 할 수 있던 협의이혼을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절차를 마련한 것은 이혼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기지만 이혼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이혼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협의이혼제도의 개정과 발전과정은 역을하게 이혼당하거나 권리를 빼앗기거나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등 법이나 제도상 장벽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현실을 가정문제의 최일선에서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역할과 맞물려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제도는 1960년 제정된 이래 별다른 개정 없이 정체상태에 있는 재판상 이혼제도와는 달리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제도와 불균형이나 이원적 구조 등으로 인해 장차 이혼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36) 김흥기, “협의이혼제도의 개선”, 『가정법원 50년』(서울가정법원, 2013), 935면.

37) 사법정책연구원,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16』(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5), 25면.

가정 폭력 상담실

행위자 상담



집단상담에서 다른 이들을 통해 위로를 얻고 자신의 상황 점검하기도

사건번호 2017버2*** 특수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4회,
음주문제상담 4회, 집단상담 3회,
교육강좌 2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3회 등 총 22회 실시

상담기간

2018. 2. 21. ~ 2018. 8. 29.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10년 전부터 사실혼으로 살고 있으며,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행위자의 모친이 두 사람의 혼인을 반대하였는데, 독자인 행위자는 홀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비밀로 하고 있다. 피해자도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였다.

행위자는 2017. 10. 사건당일, 집 거실에서 자격취득시험 준비 학원에 같이 다니는 여성과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시비하는 피해자와 다투다 멍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내리쳐 부수는 특수재물손괴를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피해자는 어릴 때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경험이 있어 폭력에 대해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행위자의 폭력이 재발한다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행위자가 오랜 기간 자격취득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 본 사건 이후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더 이상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하였고, 행위자는 일 하면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애정을 믿지 못하였고 다른 기대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어, 상담을 통해 행위자가 “왜 아내와 같이 사는지”에 대한 답을 갖게 되기를 바랐다.

행위자는 술을 마시고 감정조절을 잘못하여 폭력을 하였다고 하면서 음주문제 상담을 가장 절실한 것으로 꼽았다. 다만 일 때문에 상담일정에 맞추기 어려워 가능한 대로 상담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상담종결 시 피해자에게 행위자의 폭력재발 여부 등 변화를 점검한 결과, 폭력재발은 없었고 전과 달리 감정을 절제하고 기분을 전환시키려 노력하는 등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절주 노력을 하고, 술 자리에 갈 때에는 사전에 알려주며, 약속한 귀가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하였으며, 사건 발생 당시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5점, 지금은 7점으로 평가하였다. 행위자가 왜 자신과 사는지에 대해 완전한 답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본 사건 당시 문제되었던 학원동료와의 일은 행위자의 호기심 정도였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행위자가 자신과 미래를 함께

하려한다는 믿음이 생겼다.

행위자는 자신의 변화로 재물손괴가 가정폭력임을 알게 되어 재발하지 않은 점을 꼽았고, 피해자의 변화로는 행위자가 술을 마시고 왔을 때 비난 하지 않는 점을 꼽았다. 행위자는 현재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6~7점으로 평가하였고, 향후 피해자의 바람에 부응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사건번호 2017버2*** 상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음주문제상담 3회, 집단상담 8회,
교육강좌 1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4회, 자조모임 10회
부부상담 4회 등 총 36회 실시

상담기간

2018. 3. 16. ~ 2018. 9. 27.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3녀 1남(31세, 27세, 24세, 21세)이 있다. 아내는 친구와 술을 좋아하는데 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자주 하면서 남편이 그 중 한 명과의 관계를 의심하였고 본 건도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2017년 11월 사건당일, 남편은 아내가 술에 취해 왜 자신을 의심하느냐고 말하며 괴롭힌다고 아내의 목살과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오른쪽 눈 아래가 붓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아내는 이에 대항하여 남편의 머리를 물고 손으로 할퀴어 머리, 좌측 이마와 귀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부부 모두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아내는 남편이 10년 연상으로 생각이나 태도 등 차이에서 기인한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하

여 친구들과 모임을 자주 가진 것도 인정하였지만 의심받을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하였다.

갈등원인으로 남편은 아내의 외도(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덮고 가겠다고 하였다)와 아내가 과하게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하며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을 꼽았다. 반면 아내는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경험한 이후 음주횟수와 음주량이 많아졌다고 하였다.

상담 중기에 부부관계를 점검한 결과, 남편은 아내가 술은 마시지만 이전과 달리 주사를 하지 않고 조용히 잠을 잔다고 하였고, 그런 아내에게 자신도 이전과 달리 잔소리와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결과 부부관계가 이전보다 평온해졌고 이전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한다면, 지금은 7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아내는 남편이 많이 이해해주어 잘 지낸다고 하였고, 이전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5점 미만, 지금은 8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상담 종결 시 확인결과, 상담기간 중 부부간에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고, 관계도 개선되어 현재의 부부관계를 각 7~8점으로 평가하였다. 변화된 점으로 남편은 음주하고 늦게 귀가하는 아내를 이해하고 잔소리를 하지 않게 된 점을, 아내는 남편이 잔소리를 하지 않게 되자 남편과 함께 가끔 맥주와 치킨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게 된 점을 꼽았다.

사건번호 2017버2*** 상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1회,
음주문제상담 1회, 집단상담 8회,
교육강좌 3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2회
등 총 21회 실시

상담기간

2018. 4. 9. ~ 2018. 10. 15.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7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8세)이 있다. 부부는 결혼 후 1년간 행위자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동안 부부싸움이 잦았는데, 부부싸움을 말리던 시부가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면서 새로운 갈등 원인이 되었다. 이후 부부는 분가하였지만 다툼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가 시부 문제를 거론하였고 급기야 양가 부모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부부가 노력하고 살기로 다짐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이후로도 부부 갈등은 계속되었다. 2017년 10월 사건 당일, 역시 같은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행위자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벽에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아 본소에 위탁되었다. 본 건 재판부는 피해자도 함께 상담을 받도록 결정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정신적으로 감정이복이 심한 피해자의 상태가 법원 결정 이후 좀 나아졌다고 하였다. 상담자는 피해자와도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락을 취하여 상담 약속을 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상담약속을 취소한 후 상담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에 회신도 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행위자는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잘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였고, 상담에 성실하게 임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바라는 바가 있으면 조목조목 지적을 하는 편이었는데, 상담에 임하면서 덜 예민하게 대응하는 변화를 보였다. 그런데 상담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말경부터 피해자는 아이가 행위자를 무서워한다는 이유를 대며 행위자에게 집을 나가 살거나,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였다. 자신의 집에서 행위자는 방과 화장실에만 출입이 가능하였다. 낮에 집에 있을 때에는 피해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대화도 시도하지 못하였다.

행위자는 처음 상담에 임할 때는 마음이 복잡했고, 어떻게든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상담을 하고 특히 집단상담에서 자신보다 더

힘들거나 비슷한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다. 이전에는 '왜 자신만 이렇게 힘든 짐을 지고 가야하는가' 하는 마음이었는데 상담을 통하여 '아, 모두 이렇게 힘들구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와 화목하게 살 수 없다면 차라리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마음을 정하였는데, 막상 피해자는 오히려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행위자에 대한 거부감도 이전보다 완화되었다고 한다. 상담종결 시 행위자는 피해자가 이혼을 수용하지도, 관계 회복을 원하지도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자신은 담담한 마음으로 피해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사건번호 2018버2* 폭행
2018버2** 특수상해(병합)/
2018버2* 특수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1회,
부부집단상담 2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3회

부부상담 3회, 부부집단상담 2회 등 총 18회 실시

상담기간

2018. 4. 10. ~ 2018. 10. 8.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11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녀(11세)가 있다. 아내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이다. 아내의 한국어 소통 능력은 상담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나 사회활동이나 취업활동에는 미숙하였다. 본 건 가정폭력 신고는 4번째였으며 이전 사건으로 남편은 기소유예처분과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2017년 12월 사건당일, 남편이 술

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또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남편은 주먹으로 아내의 이마를 때리고, 아내는 커피포트로 남편의 얼굴을 때리는 상호 폭행을 하여 부부가 함께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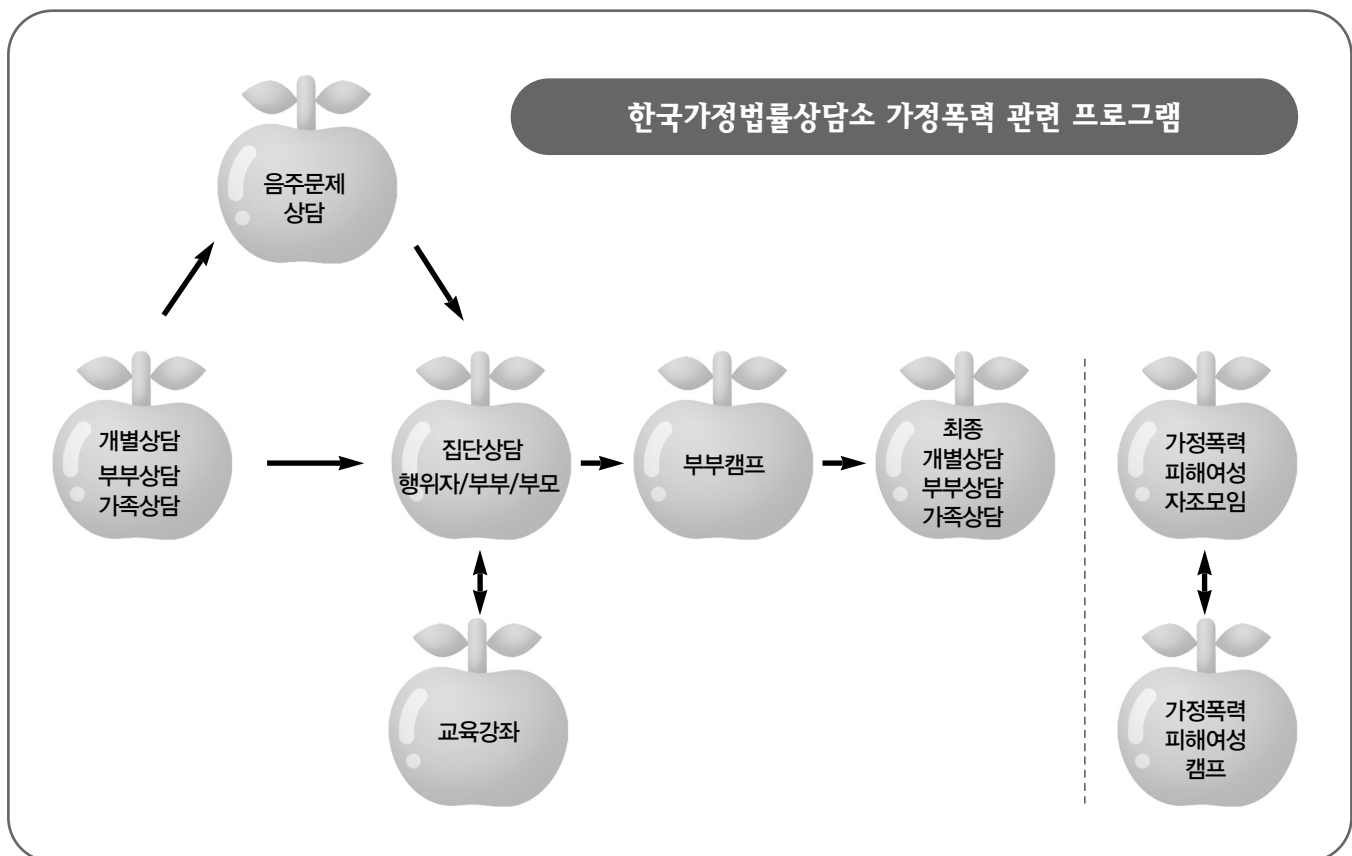
갈등원인으로 남편은 아내의 배려심 부족을, 아내는 남편의 배려심 부족과 가사 비협조 등을 꼽았으며, 특히 아내는 결혼초기에 남편이 폭력을 많이 한 점을 지적하였다.

남편은 아내가 가사나 자녀 교육, 심지어 친구교제 등 사회생활에는 전혀 의욕이 없고 본국에 있는 원가족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을 걱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아내의 진술에 의하면 아버지가 70세인데 뇌출혈에 치매이고, 남동생은 러시아 공사장에서 추락하여 허리를 다친 후 이혼하고 자녀 1명과 함께 부모 집에서 거주하며, 막내 남동생이 러시아에서 일하여 보내는 돈과 어머니가 버는 돈으로 친정식구가 어렵게 살고 있고, 본인은 친정에 다녀온 지 5~6년 되었고 남편은 결혼식 때 한번 다녀왔을 뿐이어서 남편, 딸과

함께 친정에 다녀오고 싶지만 비용 문제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친절을 배려하고 지원하되,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내려놓도록 조언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규칙적인 활동을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당부하였다. 아내도 이에 동의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기로 하였다.

상담을 통한 가장 큰 변화로 남편은 ‘화’를 내지 않게 된 점을 꼽았다. 상담종결 시 확인 결과 부부는 전과 달리 많이 싸우지 않게 되었다. 향후 갈등상황에서 화를 가라앉힌 후 대화하는 time-out 기법 활용과 폭력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다짐하였다. 현재의 부부관계를 남편은 10점 만점에 7점, 아내는 6점으로 각 평가하였고, 더 좋은 부부관계를 위하여 부부 모두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교 육 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상처 치유하고 아이와 행복할 생각, 상담과 교육에 감사하며 큰 응원 받고 가는 느낌’

- 일 시 : 2019년 7월 20일(토) 오전 9시 ~
7월 22일(월) 오후 3시
- 장 소 : 한국여성수련원(강원도 옥계)
- 참가자 : 비혼모 42명
자녀 40명
조은경, 천다라 상담위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오지현과장, 이재근 팀장(국민건강보험공단)
김예원 주거복지상담사(한국토지주택공사)
한혜현 대표(I&H 심리치유센터)
노재광 강사(아하교육컨설팅 대표, 웃음치료전문가)
최지선 센터장, 이민지 부센터장(심리상담센터 공감)
손현경 원장, 김계옥 강사(크리아트창의미술학원)
애란네트워크 직원 및 탁아 자원봉사자 등 총 118명
- 후 원 : 삼성생명 사랑의 열매

본소는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의 지원으로 비혼모 42 가정과 함께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으로 2박3일 캠프를 다녀왔다. 이번 캠프에서 참가자들은 비혼모 가정에 필요한 건강보험, 주거, 법률, 심리 관련 교육과 상담을 받았고, 상담소에서는 캠프기간 동안 아기와 엄마의 즐거운 캠프 활동을 위해 간식꾸러미와 버블진, 튜브, 입욕제, 비치백 등을 지원하였다. 날씨로 인해 수영 등의 해변 놀이는 하지 못하였지만, 경포 아쿠아리움, 하슬라아트월드 뮤지엄 등의 관람과 체험 활동 등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비혼모 가정에 꼭 필요한 정보와 상담지원

을 받았고 자녀와 즐거운 추억을 쌓았으며, 다른 비혼모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연대감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 프로그램 개관

1일차 7월 20일 (토)

- 엄마를 위한 교육

1. 「병원비 걱정 없이 자녀 키우기」

▷ 강사 : 오지현 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

경제적 빈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보험료를 체납한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결손처분제도 및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 등에 대한 강의와 상담이 진행되었다.

2. 「나를 찾는 심리 치유 여행 - 나는 엄마다」

▷ 강사 : 한혜현 대표(I&H 심리치유센터)

엄마 자신의 감정 알아차림과 상처 탐색, 나를 보고, 느끼

고, 상상하고, 감사하는 4차원의 알아차림, 상처회복과 치유, 상실이란, '나는 나' - 나다움 꿈꾸기, '나는 엄마다' - 엄마다움 꿈꾸기, 우리의 삶의 자원을 발견하기, 연령에 맞는 건강한 심리 발달, 부모로부터 받은 긍정 메시지, 내 아이의 사랑스러운 점 찾기 등의 강의를 들었다. 강의 후 엄마들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 놓고 그에 대해 질문하였고, 강사의 답변을 통해 자신의 불안과 걱정을 살펴보고, 성숙한 부모가 되는 방법, 내 아이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지지와 수용을 해주는 방법들을 배웠다.



- 자녀를 위한 활동시간

엄마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들은 연령별로 3개 반으로 나뉘어 전문 강사와 자원 봉사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활동 시간을 가졌다.

3. 「36개월 미만 아동을 위한 놀이 활동」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풍선 놀이, 술래잡기 놀이, 숨바꼭질, 동요 따라 부르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였다. 어린 아이들은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배려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4. 「3세 이상 4세 이하 아동을 위한 공감 놀이」

▷강사 : 노재광 웃음치료전문가(아하교육컨설팅 대표)

볼링, 공놀이, 홀라후프, 기차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아이들이 좋아하고 흥미를 보이는 놀이들을 진행하였다.

5. 「6세 이상 7세 이하 아동을 위한 미술 활동」

▷ 강사 : 손현겸 원장(크리아트창의미술학원)

아동들은 선생님이 교구인 캔버스에 그려준 자신들의 얼굴을 준비된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선생님이 아이 클레이로 꽃 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지도하였고, 아이들은 본인들의 얼굴을 다 칠한 후 배운 대로 캔버스 위에 아이클레이로 자신의 옷이나 배경 등을 꾸밀 수 있었다. 이후 스티커 등으로 캔버스 전체를 장식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아동들은 자신의 모습을 마음껏 표현하며 자기표현과 유능감을 경험할 수 있어서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6. 「7세 이상 아동을 위한 미술 활동」

▷ 강사 : 김계옥 강사(크리아트창의미술학원)

각 아동들에게 견본 그림을 나누어 주고 아동이 그리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가족으로 된 판에 먹지를 위에 올려서 외곽선을 그린 후 가족위에 물감으로 색을 칠하는 활동을 하였다.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집중력과 표현력을 기르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성취감을 경험하였다.



2일차 7월 21일 (일)

1. 「가족소통 체험활동 - 경포 아쿠아리움」

경포 아쿠아리움에서는 근처 경포호 및 앞바다에 서식하는 바다고기와 담수 고기를 비롯해 한국의 수달, 물범 등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종 뿐 만 아니라 쉽게 접하기 힘든 세

계의 어류, 펭귄 등을 볼 수 있다. 엄마와 아동들은 아쿠아리스트의 설명을 들으며 아쿠아리움 내의 다양한 생물들을 관람하고 기념사진도 촬영하였다. 또한 관람 후 거북이와 금붕어 밥 주기, 캔들 만들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견문을 넓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2. 「가족소통 체험활동 - 하슬라아트월드 뮤지엄」

우천 등으로 인해 바나나보트 탑승 일정이 취소되어 대신 강릉에 위치한 하슬라아트월드 뮤지엄에 방문하였다. 미술관에서 눈을 사로잡는 현대 미술 작품들을 관람하고 전망대 앞의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엄마와 아동들은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엄마를 위한 교육

3.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사 : 조은경 상담위원(본소)

저녁 식사 후 진행 된 법 교육에서는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와 개별면접 상담을 진행하였다. 강의에서는 주로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



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청구 등 비혼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 밖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빚, 은행대출, 핸드폰 요금 연체 등 채무관련 상담 시간이 있었고 파산·면책에 대한 강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 자녀를 위한 활동시간

4. 「3세 이상 4세 이하 아동을 위한 공감 놀이」

▷ 강사 : 최지선 센터장(심리상담센터 공감)

수백 개의 불풀 공을 바닥에 풀어 놓고 아동들과 함께 놀이 활동을 진행하였다. 아이들이 협력하여 공을 바구니에 넣는 활동을 하며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풍선을 갖고 놀면서 서로 주고받는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과 상대방의 인식과 배려, 그 속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5. 「6세 이상 7세 이하 아동을 위한 무용 활동」

▷ 강사 : 이민지 부센터장(심리상담센터 공감)

노래에 맞춰 살금살금 걷기, 빠르게 걷기, 그대로 멈춰라 등의 놀이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아동들은 천을 잡고 커다란 천을 조심스럽게, 빠르게 흔들다가 천 안에 한지 재질의 종이를 넣고 튕기는 활동을 하였다. 놀이 활동을 하며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여, 그 안에서 아이들이 숨바꼭질 놀이 등을 하였다. 그 후 아동들은 스스로 종이를 함께 줍고 천을 이용해서 줄다리기 놀이를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규칙을 지키고, 다른 사람

의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함께 하는 상호작용을 배울 수 있었다.



3일차 7월 22일 (월)

1.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사 : 김예원 주거복지상담사(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바우처 등 주거복지 지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계획등과 관련한 강의를 하였다. 강의 이후 강사는 주택임대차 재계약상의 유의사항, 임대주택 신청자격 여부 등 참가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개별상담을 진행하였다. 전세임대에 관련한 상담이 많았다.

○ 참가자들의 소감

황**

아이와 오기 전부터 열 밤 뒤면 간다~ 세 밤 자면 간다~ 하고 기대하면서 왔다. 온 당일에 비가 왔지만 아이와 여행갈 기회가 부족했던 저희에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비록 파도가 강해서 깊은 바다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이와 함께 모래놀이도 하고 이번여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행을 올 수 있도록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

하다. 부모교육과 건강보험에 관련된 교육도 지금 제 상황에 너무나 도움 되는 내용이었어서 또 한 번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강의 시간 동안 엄마들이 집중해서 편안히 들을 수 있게 나잇대 별로 아이들이 따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던 점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다. 비가 와서 가게 된 하슬라아트 월드에서는 아름다운 풍경과 신비로운 전시품들 속에서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아쿠아리움에서는 물고기와 거북이 먹이주기를 통해 아이들이 좋은 추억과 경험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엄마들도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세상에 나온 후 이렇게 뜻깊은 순간과 행복했던 여행은 처음이었다. 너무 행복해서 서울로 돌아가기가 아쉽다.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

김**

항상 집에서 아기와의 시간만 보내다가 새로운 곳에서 아기와 추억을 만들고 바다에서 친구들과도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바나나보트를 못 탄 점이 아쉽지만 다음에도 또 와서 아기와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처음으로 미술관 같은 곳도 가볼 수 있어 정말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휴식이란 것이 없던 저희에게 잠시나마 행복감과 즐거움도 주시고 머리도 식힐 시간을 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

캠ป์ 공지가 뜨고 선정이 된 후부터 너무 기대가 되어 잠도 설쳤습니다. 첫 날 수강한 건강보험공단 교육이 정말 유익했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조건에 맞으면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저도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 오티가 진행되면서 주어진 기념품과 간식들, 여행용 파우치와 가방 모두 예쁘고 실용성이 좋아 캠ป์ 내내 아이가 좋아하며 들고 다녔고 일상생활에서도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날 비가 와서 바다에 나가지 못해 아쉬웠

지만 선물해 주신 입욕제로 자유시간에 욕조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저녁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나를 찾는 심리치유여행’을 들으며 제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반성하게 되었고, 제 상황과 상처를 치유하고 아이와 행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훌쩍 클 동안 많이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매년 아이와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교육이나 상담해 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감사합니다. 와서 많은 힘과 응원 받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이 기분과 마음으로 아이와 열심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

경**는 집근처 병설유치원에 입학해서 방과 후 수업 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에 등교할 때마다 아이가 “다른 친구들은 엄마랑 여행 다녀왔대~ 경**이도 여행가고 싶다”고 자주 말하고는 했지만 늘 일하고 늦게 데려와야 했습니다. 엄마로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경**이를 외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 한 편이 아려왔습니다. 재작년, 3살 때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이는 인생의 첫 바다를 경험했고 큰 파도가 무서울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손을 끌고 앞으로 걸던 경**이를 떠올리며 캠프를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싫은 것, 무서운 것 많이 늘었지만 바다와 모래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 경**이가 마음껏 놀 수 있게 엄마와 아기랑 행복 나들이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신 교육의 내용이 ‘결손처리’ 과정에 대한 얘기였고 저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연체중이라 몸이 안 좋아도 병원 가는 게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카드 할부로도 금액을 나눠 낼 수 있고, 급여와 비급여(MRI, CT)에서 지금 더 많은 국민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본인 부담금이 줄고 있어서 너무 든든했고 미처 몰랐던 혜택들을 강의를 통해 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한혜현 강사님의 지도아래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적인 나의 성장과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치유에 대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 제 고민과 아이의 고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막연하게 감정에 대해 즐거우면 행복한 줄만 알았는데 하나의 기억이 놀라울 수도, 설렘 수도, 번거로울 수도, 황홀할 수도 있는 다양한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어서 아이에게도 표현할 때 흐뭇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조금 더 제 감정에 대해 솔직하고 풍부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거와 법률상담, 양육비 청구나 파산 면책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 대해 포기하며 지냈던 것들을 당연한 나의 권리로 배울 수 있어 정말 유익했습니다.

조**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 여름 캠프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좋은 추억을 쌓고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꼭 막힌 도시의 정해진 규칙과 시간 그리고 답답한 환경에서 자랐을 내 아이가 이렇게 여름 행복 나들이를 통해 자연과 더 친해지고 엄마랑 눈도 마주치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매사 불평불만이 많았고 나만 혼자 힘들 것이라 생각했던 탓인지 남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했지만 2박 3일의 캠프를 통해 반성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에도 즐기며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희**이와 오랜만에 옥계 캠프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설레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전일부터 아파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행히 약 먹고 금방 좋아져서 아이와 힐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꼭 오고 싶었던 캠프인 만큼 다들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김**

아이가 태어나 7년이 흘렀다. 흐르는 동안 함께 어딜 여행해 본 기억이 사실은 딱히 없는데 이렇게나마 아이와 함께 바다를 볼 수 있음에 감사하다. 으레 여름이면 아이와

제 생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추억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이렇게라도 짧게나마 시간이 생긴 것에 아이도 나도 너무 행복하다. 삶이 너무 팍팍해 웃을 일도 많이 없고 아이에게 늘 짜증과 호통만 쳤는데 놀러온 3일 동안만이라도 깊이 생각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어 지상낙원이 따로 없었다. 특히 삼시세끼 제 손으로 밥하지 않아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동이었고 행복했다. tv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누우면 바다도 보이고, 꿈같은 시간이었다!

임**

감동입니다. 객실이 깨끗하고 편안합니다. 아쿠아리움에서 양초 만드는 체험활동을 했는데 아이가 물고기가 못생겼는데 귀엽다고 좋아합니다. 늘 집에서 저와 둘이만 있다가 누나, 동생들과 노는 것이 신이 났는지 연거푸 '신난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소리를 듣고 그동안 동**이와 놀아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물놀이를 못했지만 미술관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는 피노키오 목각인형과 곳곳에 설치된 미술작품들이 신기한지 올라타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의 여유가 없어 갖지 못했던 예술작품을 감상하니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듯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하기까지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한두 번의 생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도 열두 번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래도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엄마자리, 아빠자리,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뭉까까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올해에는 친구 같은 엄마로 잘 해봐야지 하면서 일에 치여, 집안일에, 아이 학교, 유치원 준비에 다짐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고 시간에 쫓겨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여름」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는 이런 지친 마음에 단

비같이 심을 느끼게 해주었고 여유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짜증과 피곤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이와 함께 모처럼 크게 웃고 즐기며 또 다시 버틸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해외여행가고, 휴가를 간다고 의기소침해 있던 아이에게는 특히 더 기다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마다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신경써주시는 모습에도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가자들이 필요한 지원 및 바라는 점

어려운 점

1. 경제적인 문제, 소득의 불안정, 육아로 안정적인 구직이 어렵고, 소득이 적음.
2. 양육비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됨.
3. 육아 스트레스, 자녀 교육비가 걱정됨.

바라는 점

1. 정부의 양육비 및 생계비 지원
2. 직업교육 및 교육비 지원

○ 정리

2009년 7월에 비혼모 캠프를 처음 시작한 이래 이번이 13회 캠프로 10년째이다. 10년 전에 비해 사회적·정책적으로 비혼모들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으로 차가운 시선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느끼는 고통이 여전함을 알 수 있었다. 비혼모 가정의 겪고 있는 법적·경제적·제도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이들이 당당히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본소 역할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조은경 상담위원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1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평생교육 사업의 시작 (2)

1978년 3월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으로
‘어머니학교’ 개설

4월 지속적인 출판, 홍보, 조사연구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출판사 등록 (등록번호 13-13)

어머니학교

- 30~40대 반의 증설과 시어머니학교, 며느리학교

어머니학교의 학급증설이 이루어지면서 1980년 9월부터 시작되는 제6기 어머니학교부터 30~40대 반을 새로 마련했다. 고부문제에 중점을 두어 온 교육취지에 입각하여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자면 50~60대의 시어머니만을 교육할 것이 아니라 현재 어머니이자 며느리이며 또 곧 시어머니가 될 나이에 있는 30~40대들에게도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제6기 어머니학교는 30~40대 반을 화요반으로, 50~60대 반을 금요반으로 하기로 하고 학교 각반 80명씩의 학생모집에 나섰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시어머니, 며느리학교가 된 이 제6기 어머니학교는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켜 입학식 전

에 정원이 마감되었고 입학식 날에도 신청이 쇄도하는 바람에 다음 학기에 등록하도록 권유하느라 직원들이 진땀을 빼기도 했다.

상담소는 시어머니반과 며느리반의 성격에 맞춰 교과과정을 새로이 준비하되 어머니학교라는 통일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어머니학교, 며느리학교라는 두 반의 교과 과정은 시어머니 반의 경우 고부문제를 중심으로 가족 간의 관계와 가정 생활상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노후생활을 위하여 영양, 건강, 정신건강 등을 지도하였다. 또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신을 기르기 위하여 가정의 민주화, 자원봉사, 소비자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진행하였고, 변천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률, 정치, 공해문제 등에 중점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 어머니학교 총동창회 모임



▲ 제2기 어머니학교 국회 참관을 마치고

을 두었다. 며느리 반에서는 고부문제와 함께 부부생활의 지혜, 여성의 의식화 그리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을 위해 어린이 지도, 영양, 10대의 정신위생과 지도법을 교육하였다. 또한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 식품공해 등의 강좌를 신설하고 변천하는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의 움직임, 경제, 소비자운동, 법률, 생활의 과학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이 학교를 거쳐 간 동창생들도 점점 더 어머니학교 및 상담소와의 인연을 넓혀갔다. 매기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기별 동창회를 조직하였고 이 동창회는 다시 연합으로 어머니 학교 동창회를 결성하여 매월 한 번 씩 목요일법률강좌가 있는 날 오전 상담소 강당에서 모임을 갖고 회비를 거두어 기금을 만들면서 학교운영에도 음양으로 관심과 협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고부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어머니들이 가정 내의 문제는 물론 바깥 세상에 대해서도 폭넓은 시각으로 오늘의 세계를 호흡할 수 있도록 재교육의 장으로 시도한 이 프로그램은 1980년부터는 기존의 1개 학급을 2개로 늘리고 교육기간도 12주에서 18주로 연장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구열은 날이 갈수록 드높아져 '좀 더 배우게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 하지만 상담소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버지학교, 신랑신부학교, 할머니할아버지학교 등의 가족학교를 하나씩 새로 늘려나갈 계획이었으므로 어머니학교 증설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학생들은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 졸업생 중 일부는 새 학기에 재수생의 자격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데 하면 가족법 강좌 등 상담소의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학구열을 채우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모습에 상담소는 어떤 형식으로든 어머니학교의 교과과정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마침내 1983년 3월부터 2학년 반을 신설하게 되었다. 2학년 반의 수업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정해졌고 1학년 반과 마찬가지로 하루 2강좌 씩 총 32강좌를 16주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2학년 반은 상급반인 만큼 강의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 생활주변의 미시적인 현실로부터 이를 총체화한 정치, 경제 등의 거시적인 현실에 이르기까지 교과과정을 구성했다. 강사진도 주제별로 최고 권위자를 초빙, 대학 수준에 필적할 만한 강의를 시도했다.

이처럼 변화하는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어머니들이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지혜를 길러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함으로써 보람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리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어머니학교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모두 29기 졸업생을 배출하여 30대~6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편집부

결혼과 인생 (198)



부탁 하나만 들어줘

감독 폴 페이그

출연 블레이크 라이블리, 안나 켄드릭, 헨리 골딩



싱글맘 스테파니(안나 켄드릭)는 전업주부로서의 틈을 알려주는 브이로그를 운영하고 학부모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며 살아간다. 그러다가 아들의 친구 엄마인 에밀리(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친해지며 늘 똑같기만 하던 스테파니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진다. 잘나가는 홍보대행사의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워킹맘 에밀리는 완벽하게만 보였다. 유명한 소설가 남편 선(헨리 골딩)과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며, 누구라도 당장 빠져들 만한 매력적인 외모에 강렬한 카리스마, 사생활 노출을 극도로 꺼려하는 신비로운 면모까지, 에밀리는 스테파니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에밀리가 스테파니에게 자기 대신

아들의 하룻길 픽업 좀 대신해달라는 부탁을 남긴 채 사라지고, 며칠 뒤 호수에서 시체로 떠오른다.

길리언 플린의 베스트셀러 <나를 찾아줘>(데이빗 핀치가 영화화하기도 했다) 이후 여성이 주인공으로 전면에서 나서는 스릴러, 남편이나 연인 혹은 가족 간에서 벌어지는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둘러싼 스릴러는 메인스트림의 한 갈래로 정착했다. 영미권에서는 이를 ‘가정(domestic) 스릴러’라고 명명했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로 항상 고정되어 있던 ‘가정’은 잠재적인 폭력과 위협과 범죄가 은밀하게 꿈틀대는 무대로 급부상했다. 달리 말하자면, 가정은 언제나 ‘그래왔던’ 곳이지만 이제야 비로소 ‘발견’되었다고 표현하는 편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남자들끼리의 거친 몸싸움에 비하면 사소한 분쟁 정도로만 치부되어 왔던, 여자들이 일상에서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불현듯 느끼는 어렴풋한 악의와 압박감은 최근에서야 실질적인 범죄의 전조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부탁 하나만 들어줘> 역시 <나를 찾아줘>의 자장 안에 속해 있다. 모두의 부러움을 받던 여인이 갑자기 실종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완벽한 겉모습 뒤에 숨겨졌던 어두운 과거는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온갖 조건들이 얼마나 숨 막히는 억압으로 작동하는지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이를테면 <부탁 하나만 들어줘>의 에밀리와 스테파니는



‘엄마의 자격’에 의해 양극으로 나뉜다. 에밀리는 유능한 직장인이자 매력적인 아내이지만 ‘나쁜 엄마’로 여겨진다. 회사 일 때문에 아이를 제때 픽업하러 오지 못하고, 학부모 활동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으며, 아이의 먹거리에 세심하게 신경 쓰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가 잘 따라오는 지 뒤돌아보며 아이에게 보조를 맞춰주는 엄마도 아니다. 스테파니는 정확히 그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좋은 엄마’, ‘본받을 만한 엄마’로 묘사된다. 소위 사회에서 기대하는 ‘유일한 양육자’로서의 엄마의 역할을 얼마만큼 수행하느냐에 따라 그 인물 자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결정된다. 이를테면 성실한 싱글맘(으로 여겨졌던) 스테파니가 그 아이의 출생에 관해 숨기는 미심쩍은 비밀이라든가, 아이보다 자신의 성공에만 열중한다고 은근히 비난받던 에밀리가 실질적으로 가족을 먹여살리는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질주해왔는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길리언 플린의 소설이자 데이빗 핀치의 영화 〈나를 찾아줘〉가 대단히 냉소적인 블랙코미디였던 것에 비해, 폴 페이그의 〈부탁 하나만 들어줘〉는 영화 내내 삽입되는 프랑스 대중가요들의 발랄한 리듬에 어울리게 산뜻한 스타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정 스릴러의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좀 더 받아들일만한 무언가로 변화시킨다. 무엇보다 드라마 〈가십걸〉로 절정의 스타덤에 올랐던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연기하는 캐릭터 에밀리는 관객을 압도한다. 2007년 당시 미국의 화려하고 흥청망청한 분위기를 아무 근심걱정 없이 담아내던 바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12년 뒤 불황과 내 집 마련의 현실적인 벽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현실감이 배가되고 감정이입은 극대화된다. 배우 개인으로서도, 〈부탁 하나만 들어줘〉라는 영화로서도 최고의 캐스팅이었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실무수습 소감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무수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소에서 7월 1일부터 2주간 실무수습을 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소감문을 실는다.

이 경 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떠올리면 전화벨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상담소에는 수많은 전화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온다. 협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가 궁급한 사람, 단순 법률지식이 궁급한 사람, 그리고 몇 년 째 가정폭력에 시달려 도움을 요청하려는 사람 등. 사연의 경중은 저마다 제각각이지만,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실감하게 된다.

2주간의 실습을 마친 지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한 마디로 말하자면, 법의 인간적 감수성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법학 수업을 처음 들으면서 만나게 된 ‘법률’이라는 분야는 내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어릴 적 생각했던 법이란 정의구현의 수단이었지만 실제로 법은 정의 외에도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 사이의 균형을 지켜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일반인이 보기에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가사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내는 수년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혼인파탄에 쌍방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기도 하고, 이혼을 하면서 원했던 만큼의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법이란 언뜻 보면 원리원칙만 중시하면서, 개개인의 사정은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어렵고 억울한 처지의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며, 그러한 법이 ‘사람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한국가정

법률상담소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곳의 변호사님과 상담위원님들은 가장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밖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가정문제에 관해 상담을 하고, 소송을 지원해준다. 10년간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의 혜택을 받을 방법을 알아야 할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에 시달리고 자식의 병원비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국가에서 채무를 면해주는 파산면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파산면책제도가 있다 한들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어려운 법률지식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상담소와 같은 기관의 법률구조활동 덕분에 가족법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법률구조란 단순히 사회봉사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존재의미를 되새기고 뒷받침 해준다는 점에서 법 그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활동이며, 법조인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때로는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거나, 복잡한 것이 싫다며 도리어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항상 친절하게 법률구조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위원님들께 존경을 보내며, 미래에 법조인이 되면 이번 실습을 통해 배운 마음가짐을 실천하고 싶다.

변 해 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무수습을 시작하기 전날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 학기를 마치고 온 제가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선생님들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소중한 기회를 허투루 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수습 첫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발을 들이면서 그리고 아침회의에 참석하면서 제가 선부른 걱정을 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매우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으며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저의 사소한 질문에도 친절하게 대답해주셨습니다.

실무수습 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상담 참관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구조기관입니다. 따라서 내담자들이 기초생활, 고령, 장애인, 한 부모가정 등 수급권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을 잘 몰라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그것이 가정폭력인지 모르거나 혹은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한 줄 모르고 오랜 시간 참아오다가 마침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이혼 후 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거나 폭언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육아와 생계로 힘들어하며 해결할 방법을 묻는 사람 등 사정은 각자 다를지라도 모두 법을 잘 몰라 억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내담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고 위로해주시면서 법률구조와 해결 방법에 대해 상담해주셨습니다. 내담자들은 상담소의 도움을 받고 고마워하였고 때로는 감동과 안도감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상담 참관을 통해 저는 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저의 꿈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고 꼭 이러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수습의 마지막 날 참석한 아침 회의에서 선생님들과 소장님께 감사함을 담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2주간의 실무수습 기간이 벌써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고 아쉽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과 느낀 점을 잊지 않고 소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이곳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겐 공감하고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면접상담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5시(접수 오후 4시까지)
- 야간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접수 오후 7시까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접수 오후 7시까지)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5시
- * 사전 예약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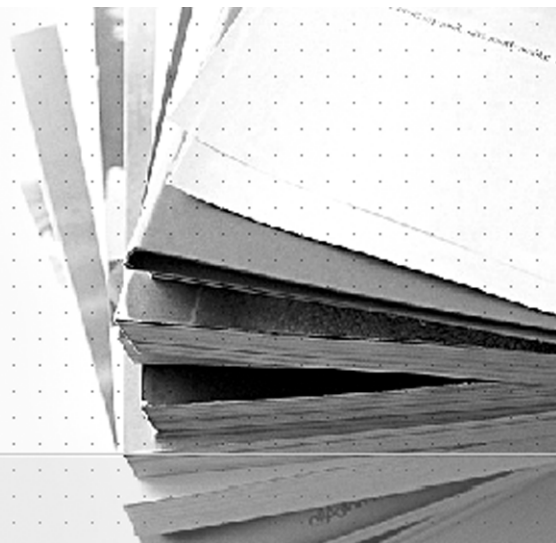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 평일 : 오전 9시~오후 5시

인터넷상담

- <http://www.lawhom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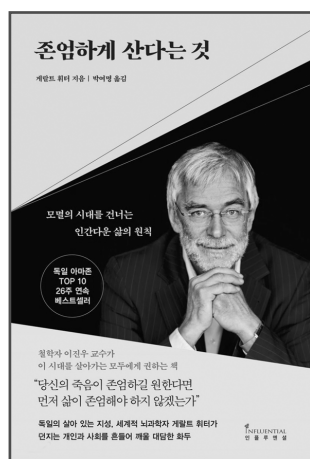
좋은 책



존엄하게 산다는 것

게랄트 휘터 지음 박여명 옮김

인플루엔셜, 2019



“모든 인간은 매 순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갈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책의 에필로그 바로 앞 장에 이런 문장이 있고, 나는 문장 전체에 밑줄과 같은 동그라미를 쳤다. 저자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이란 바로 이러한 것일 터이다. 200쪽 남짓, 두껍지 않은 책인데 여러 날에 걸쳐 쉽지 않게 읽었다. 한두 번 정도 더 읽게 될 듯하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에 대해서 - ‘신의 모상으로 창조 되었기 때문이라는’ 종교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 오랜 시간 인류가 서로 피 흘리며 마침내 도달한 어떤 선언, 참인 명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근래에 들어서는 ‘존엄한 죽음’에 대해 생각할 계기가 많았다. 그리고 삶의 질은 담보되지 않는데 의학의 발달이 생명연장으로만 이어지는 현실에 대해 막연히 성토했곤 했다.

그런데 독일의 신경생물학자 게랄트 휘터는 환경오염으로 꿀벌이 사라진 괴팅겐의 들판에서 “사람들은 왜, 품위 있는 존엄한 죽음은 말하면서도 그 이전에 존엄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인간의 뇌를 연구해온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것이 이 책 『존엄하게 산다는 것』이다. 즉 존엄이라고 하면 위의 나처럼 보통 헌법에 보장하는 천부인권, 철학적 주제를 생각하지만 저자에 의하면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존엄이란 인간이 타고난 본능이자 삶 속에서 다시 되살려야 할 감각이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품위를 잃고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모멸의 시대, 진정한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존엄이라는 삶의 원칙을 되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존엄의 정의를 자연과 학적인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했으며 그에 의하

면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이해한 지식이나 깨달은 사실은 두뇌의 감정적인 영역을 활성화시켜 우리를 깨우고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는 곧 진정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게 된 인간은 결코 타인의 존엄을 해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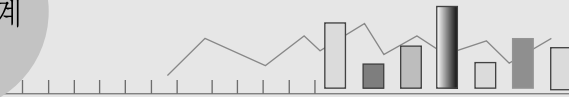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일어서고 알아서 어미의 젖을 찾듯 다음 날이면 어미와 함께 거닐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동물들보다 훨씬 가변적이어서 그러한 행동이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동물과 달리 성장기 뇌의 발달 단계에서 뿐 아니라 평생에 걸쳐 새로운 경험들을 토대로 뉴런이 연결되고 회로 패턴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뇌는 사회적 뇌라 할 수 있으며 신념, 표상의 형성 과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왔다. 즉 존엄은 인간의 본능에 새겨진 것이며 “내면의 확신으로서 한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며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든다”고 한다.

그 자체로 목적이여야 하는 인간은 현 시대에 평가의 대상과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저자는 이런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교육의 문제이며 대책이 아니라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를 배우는 과정이 충분히 주어질 때, 인간의 두뇌는 일관성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함으로써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존엄을 통해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한다.

저자 게랄트 휘터는 1951년 동독에서 태어났으며, 불안과 우울, 잠재력 등에 관한 뛰어난 뇌과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삶에 대한 통찰을 대중에게 친숙한 언어로 전달하는 독일의 신경생물학자이다.

이 숙 현 편집부장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신연중학교 학생들 본소에서 법률구조체험교육

본소에서는 7월 3일 신연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교사들 75명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활동’에 대한 영상시청과 중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교육으로 ‘알기 쉬운 형사재판’에 대해 조은경 상담위원의 강의를 있었다. 강의 후 성폭력을 주제로 신연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역할을 맡아 형사모의재판을 공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실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학생들 눈높이로 각색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법상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며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였다. (관련사진 2면)

■ 학생들 후기

– 법이라고 하면 그냥 드라마에서만 보고 검사, 변호사 등도 드라마에서만 보던 인물이었었는데 모의재판에서 직접 연기도 해보니 무언가 더 실감이 났다. 검사가 되고 싶었는데, 더 하고 싶기도 하고 그 직업이 힘들어 보이기도 하였다.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간 것 같고 정말로 너무 좋았다. 다음에 정말 또 오고 싶고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강의를 듣기 전에는 법에 관련된 내용이라 지루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강의를 듣다보니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모의재판을 할 때 대본을 읽고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재판처럼 자리도 똑같이 하고 있어서 재판을 하는 모습이 멋있고 인상적이었다.

–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에 대한 영상을 보고 퀴즈도 맞히고 모의재판을 하였다. 영상과 퀴즈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 뿌듯하기도 했다. 나는 모의재판에 재판장 역할로 참여했는데 되게 보람차고 좋았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영상이 아니라 친구들이 하는 것이라서 더 집중과 몰입이 되었던 것 같다.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상반기 가정폭력관련시설 현장점검 받아

지난 7월 2일 영등포구청 보육지원과에서 본소를 방문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한 가정폭력관련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종사자 관리, 안전점검, 내담자 및 사업관리 현황, 예산 및 실적 등을 점검하였고, 본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진행 현황 등을 확인하였다.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에서는 7월 25일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의 강의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45명이 참석하였다. 강의주제는 ‘분노의 남용’ 이었다. 강사는 부정적인 감정 자체는 상대와의 관계를 교정하도록 도와주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건강한 감

정이지만 의미 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을 끊임없이 고민하여 건강하게 처리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강사가 실제 부부의 갈등의 예를 설명해주어 이해가 쉬웠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강의는 2019년 9월 26일 ‘조정되지 못하는 핵심 상처’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실무수습 2기 과정 진행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소에서의 실무수습 2기 과정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다. 2기 실무

2019년 7월 본부 상담통계

총상담 7,361			
법률상담 (6,744)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1,172	5,384	136	52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444	120	53	

* 인터넷 정보 이용 53,703건

2019년 7월 한 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7,361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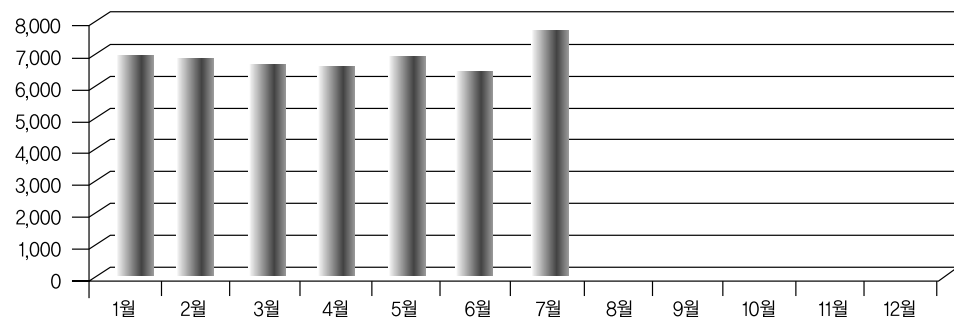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6,744건(91.6%), 화해조정 444건(6.0%), 소장 등 서류작성 120건(1.6%), 소송구조 53건(0.7%)이었다.

법률상담 6,744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9년 6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이혼(18.6%→20.7%), 친권·양육권(5.9%→6.5%), 인지(1.4%→1.7%), 가사절차(5.3%→6.6%), 성년후견(2.5%→2.6%), 가사기타(5.4%→7.9%)에 관한 상담이 증

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0.3%→0.6%), 파산(2.4%→2.6%),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0.3%→0.4%)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6,744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172건(17.4%), 전화상담 5,384건(79.8%), 인터넷상담 136건(2.0%), 순회상담 52건(0.8%)이었다.

2019년
월별
총 건수



수습 과정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이정민, 변혜리 두 학생이 참여하였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 7.3. 법률구조체험교육(3)-신연중학교 1학년
- 조은경/천다라 상담위원
- 7.3.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
- 최수진 상담위원
- 7.4. 강서지역자활센터-가족법및신용회복 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대학생 현장실습

●이화여대

이유림, 이현학

●동국대

강유리, 박유진, 김민재, 김정언, 박현진, 송혜영, 오창호, 이지은, 정희원, 최다한, 최유림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다혜,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백국현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7월 8일 서울가정법원 조정에 참여하였고, 22일 서초동 J빌딩에서 열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가족법제개정위원회에 참석하였다.

고맙습니다

2019년 7월 자원봉사자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소영, 강운영, 강종협, 김태주, 박수열, 손태홍, 안서연, 오현희, 이현정, 임방글, 진보라 변호사 님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연두, 김윤미, 이승주, 장주용,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임채룡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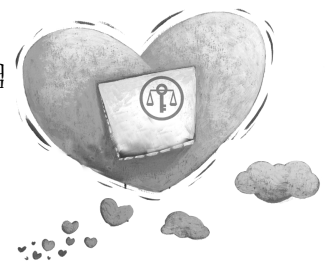
•학생 자원봉사

김준성, 김하영, 나현수, 노규림, 문채현, 박수연, 박범근, 오정훈, 이원정 님

후 원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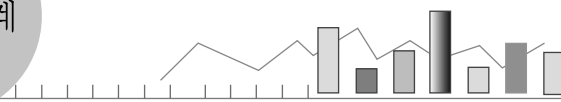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강릉지부**

7월 26일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상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유관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심지현, 조영삼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구리·남양주지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 형사조정을 각 10회 실시하였다. 이경숙, 정이수, 김효경, 장경아, 황은하, 여지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에서 출장상담 55건, 가사조정 17건을 실시하였다.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지원사업으로 부모교육(총 4회, 26쌍 부부)을 실시하였다. 장준범, 김재철, 박경화, 박재한, 구은미, 권중한, 이승익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에서 6회, 광주시법원에서 2회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으로 성남지원에서 상담 5회, 내소 8회 실시하였다. 문대근, 김정혜, 이유리, 민진국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를, 강은혜, 이수연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송도지부

7월 11일 논현경찰서 솔루션회의에 참석하였고, 18일 동춘동에서 가정폭력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법접근센터 출장상담을 실시하였다. 7월 19일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임용호, 강은혜, 송지영, 한준엽, 이윤선, 박진우, 김현수, 장수진, 김정혜, 문나연, 박지현, 황미옥, 김현명, 박지훈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하는 '2019년 공간문화개선사업'에 선정되었다.

익산지부

7월 4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소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다. 11일, 2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전주지부

7월 2일, 16일 LH 전주주거복지통합지원센터에서 출장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홍보를 실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상담 및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2일 전라북도 양성평등기념식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가 도지사상을 수상하였다. 5일 전주시 양성평등기념식장에서 가정폭력예방캠페인 및 법률구조사업 홍보를 실시하였다. 문승현, 박병진, 박정교, 김영, 한지영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7월 8일 장충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가정폭력예방활동 및 상담소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재경, 김창진, 장상현, 박은

정, 정형준, 이동건, 홍지혜, 이효재, 여지은 변호사가 법률 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시부

7월 5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가정폭력예방 홍보를 실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7월 5일, 1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8일, 22일 보호관찰소 위탁 위기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백경석, 민태식, 박인옥, 이창희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시부

6월 28일 충북 실버문화 페스티벌 행사에서 법률구조 홍보를 실시하였다. 7월 3일 2019 충청북도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에 홍종호 소장이 수상하였다.

춘천지부

7월 2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상담을 실시하였다. 허남정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6월 지부 상담통계

구 분 지 부	총 건수	법률상담	법률구조		
			화해 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강릉 (033) 652-9555	102	98			4
구리·남양주 (031) 551-9976	265	43	219		3
군산 (063) 442-1560	146	122	23		1
대구 (053) 745-4501	794	640	146		8
대전 (042) 520-5258	171	170		1	
동해 (033) 535-0188	111	111			
목포 (061) 273-2514	153	153			
부천 (032) 667-2314	274	251	23		
성남 (031) 707-6661	421	364	54	3	
송도 (032) 834-1369	167	68	90	2	7
수원 (031) 243-4600	359	299	56	2	2
순천 (061) 753-9910	173	166	5		2
안동 (054) 856-4200	136	125	10		1
울산 (052) 246-9568	114	104	4	1	5

구 분 지 부	총 건수	법률상담	법률구조		
			화해 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익산 (063) 851-5113	259	259			
인천 (032) 865-1120	334	140	185	3	6
전주 (063) 244-2930	201	198			3
정읍 (063) 535-3705	133	132	1		
제천 (043) 644-5690	170	150	17		3
중구 (02) 2238-6554	330	330			
진주 (055) 746-7975	163	115	46		2
창원·마산 (055) 261-0280	302	294	7		1
창주 (043) 257-0088	182	162	8	12	
춘천 (033) 257-4688	211	211			
태백 (033) 554-4004	98	98			
평택·안성 (031) 611-4251	173	149	22	2	
포항 (054) 283-7555	48	47			1
지부총상담	5,990	4,999	916	26	49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이혼 후 비양육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전남편의 친권자등 변경 청구
기각 결정**

법률구조 2018-133

담당 : 김지현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내용 : 피청구인(여, 37세)과 청구인(남, 42세)은 2016년 7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세)을 두었으나 청구인의 경제적 무책임, 폭언, 의처증 등으로 2018년 1월 협의이혼 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청구인을 지정하고, 청구인은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협의이혼 이후 청구인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8년 2월경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사건본인과 함께 청구인의 모친을 찾아갔다. 이 때 청구인의 둘째 형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가 길에 유기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에게 사건본인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청구인의 모친은 인도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에 응소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8. 10. 22.)

1.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무책임한 부를 상대로 한 인지,
양육비 청구 승소 판결**

법률구조 2018-283

담당 : 류은아 변호사

사건명 : 인지 등

내용 : 원고(여, 24세)는 피고(남, 24세)와 2016년 교제를 시작하여, 10개월 정도의 교제기간을 가진 후 2017년에 헤어지게 되었다. 원고는 2018년 3월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사건본인은 아버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출생신고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만나 인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당시 피고는 인지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되었고,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양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연락을 회피하는 등 사건본인의 양육에 무책임하고 사건본인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한 적도 없다. 이에 원고는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9. 5. 30.)

1.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이 종전의 성인 “ㄱ”과 본인 “ㅇㅇ”을 계속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 3. ◇.부

터 2037. 3. ◇.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업실패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21

담당 : 정민영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41세)은 2005년경 저축예금 4,000만 원과 친척에게 빌린 2,000만 원, 동업자 투자금 6,000만 원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2008년경 동업자가 신청인의 가게 인근에 또 다른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동업자는 투자금 6,0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금을 반환하였고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동업자가 직원들을 스카우트 해가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적자가 지속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금융권과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선수금으로 5,000만 원을 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인테리어업자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잔금을 요구하였다. 인테리어업자는 친척의 지인이었기에 신청인은 별 의심 없이 잔금을 치러주었으나 인테리어업자는 공사를 중지하고 잠적해버렸고, 신청인은 대출금으로 힘겹게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가게 문을 연 신청인은 열심히 일하였으나 이자 변제에 급급해야했고 매출이 계속 떨어져 폐업에 이르렀다. 현재 신청인은 간헐적으로 일용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거의 없어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회생법원 2019. 6. 27.)

채무자를 면책한다.

혼인기간 내내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19-59

담당 : 장미애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

내용 : 원고(여, 46세)와 피고(남, 48세)는 2017년 10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원고를 폭행하였다. 2018년 2월경 피고는 술에 취해 귀가하여 원고의 옷을 벗기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으며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또한 부엌칼을 원고의 목과 배에 겨누고 함께 죽자며 가스 배관을 자르기도 하였다. 같은 해 9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해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며 운전자가 원고라고 거짓으로 보험신고를 하라고 했다. 원고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는 원고를 보자마자 화를 내며 먹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이 잠시 멈춘 사이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는 도망쳤다가 이틀 후 원고를 찾아와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는 열쇠수리공까지 불렀고, 원고는 경찰의 도움으로 집을 나와 지인의 집으로 몸을 숨겼다. 이와 같은 사건들로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수원가정법원 2019. 6.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15.까지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더 이상의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지급을 회피한 부에게 양육비 이행명령 및 직접지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9-90, 91

담당 : 김세환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내용 : 신청인 겸 채권자(여, 28세)와 피신청인 겸 채무자(남, 30세)는 2016년 2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2세)을 두었으나 2018년 7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 이혼 후 신청인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보러오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고 지내고 있다. 더욱이 신청인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생활비와 사건본인 치료비 등의 지출로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더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이행명령 결정 (광주가정법원 2019. 6. 19.)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정법원 2018드단○○○○ 이혼 등 사건의 2018. 7. 9.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2019. 3. 31.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560만 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이 고지된 날부터 8개월간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결정 (광주가정법원 2019. 4. 17.)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말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배우자에 대한 보증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122

담당 : 남기웅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2세)은 배우자와 혼인 후 가정주부로 생활하였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1993년경 건설 장비인 범퍼카를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했던 배우자는 신청인 명의를 이용해 신규자동차를 구입하였다. 하지만 사업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자동차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배우자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주부로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밖에 모르던 신청인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서야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IMF 외환위기로 배우자의 사업은 부도를 맞았고, 신청인 명의로 발생시킨 채무를 책임지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식당과 보험회사 등을 전전하며 일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어렸을 때부터 앓고 있던 장애가 있어 장시간 일을 할 수 없었고, 경제형편이 어려워질수록 배우자의 음주와 가정폭력은 심해졌다. 결국 견디다 못한 신청인은 2006년경 이혼을 하였다. 신청인은 이혼 후 일용근로를 전전하였으며 자녀들에게 지원을 받아 생활하였다. 이처럼 명의를 도용당하여 1억 5,000만원이라는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회생법원 2019. 7. 15.)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2019년 8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9월 9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19년 1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8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시	강의제목
9월 26일(목)	8. 조정되지 못하는 핵심 상처
10월 24일(목)	9. 부부갈등에 관여하는 부모와의 관계
11월 28일(목)	10. 마음과 언어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감성학교-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기 : 무료공개강좌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10월 10일	평온 : 내 힘으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기	우애령 (사회복지학 박사, 작가)
11월 14일	고립감 : 혼자 또 같이 충분한 삶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전문연구원)
12월 12일	소속감 : 연결의 기쁨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침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1박2일 자녀동반 캠프

- ▶ 일 시 : 2019년 9월 6일(금) ~ 9월 7일(토)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장 소 : 용인 에버랜드
- ▶ 후 원 : 삼성생명의 이웃사랑성금으로 사랑의 열매가 지원합니다.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3 「병원비 걱정 없이 자녀 키우기」

▷ 강의내용 :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결손처분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한 강의 및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 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4 「용인 에버랜드 체험활동」

